



교육부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2026. 3.

교 육 부
(대 학 지 원 관)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사업 개요	2
III. 2026 년 추진 내용	4
1. 중점 추진방향	4
2. 세부 지원계획	5
3. 사업비 집행기준	9
4. 정성성과 평가 계획	10
5.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	15
IV. 기타 행정사항	18
V. 향후 일정	18
[붙임1] '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19
[붙임2] '26년 정성성과 평가 지표(안)	20
[붙임3] 정량성과 교육여건 지표 정의	21

I. 추진 배경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의 과감한 구조개선 필요

- 학령인구 감소는 개별 대학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향후 대학 전반의 미충원 구조가 심화될 가능성 증대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 대학의 적극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26.8.15.)

□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에 따른 고등교육 불균형 심화

- 학령인구 급감, 수도권 학생 쏠림으로 지방대학 충원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 기반 약화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

※ '25년 일반대학 신입생 미충원 인원의 85.4%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

※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25) : (수도권) 1,986.3만원 > (비수도권) 1,665.2만원

- 지방대학 위기는 지역인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간 균형성장을 위한 전략적 지원 및 차별화 불가피

※ 청년층 수도권 거주 비중 : ('00) 49.1% → ('20) 53.8% → ('24) 54.8%

□ 사·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교육혁신 요구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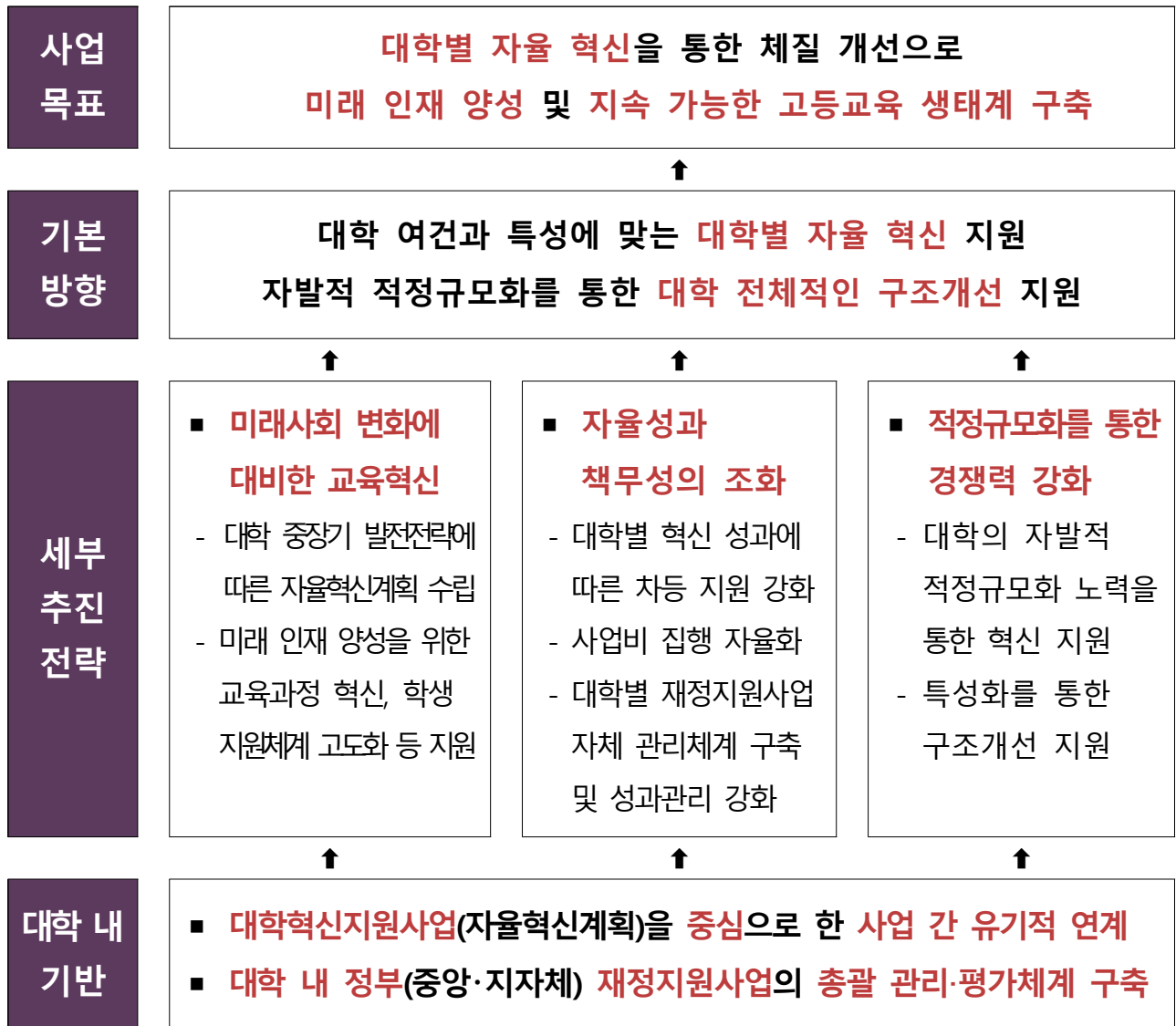
- 급속한 첨단기술 변화에 맞춰 대학은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일자리와 전공 불일치 문제 등 현장 수요 변화에 비해 혁신 속도는 미흡

※ '25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 정도는 69개국 중 58위

- 대학이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AI 시대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의 혁신 필요

Ⅱ. 사업 개요

1 기본 방향



❖ 대학이 자율적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적정규모화 등 대학 전반적인 교육시스템 개선에 주력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5. 3. 1. ~ '28. 2. 29.(3년)
- (참여 대상)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
 - * 인증유예, 인증정지, 불인증(인증취소 포함)대학 및 기관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 ※ 사업기간 중 기관평가인증 미통과 시 지원금은 일할 계산하되 당해연도까지 사업기간 유지
 - ※ 사업기간 중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연도 기 지원금 환수(전액 미지원)
- (지원 내용)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교육·연구·기타 총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으로 지원
- (지원 규모) '26년 8,191억원
 - ※ 사업관리비 27억원, 지방대학 특성화 인센티브 850억원 포함

□ 자율혁신계획 수립

- (기본 방향) 대학별 '25년 기 수립한 3주기 자율혁신계획을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수정·보완 가능
 - ※ '26년 신규 진입대학은 혁신 방향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 후 '26~'27년 계획 수립
- (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 141개교 전체
 - ※ 자율혁신계획 미제출 시 지원 불가(혁신 방향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 후 제출)
- (결과 활용) 자율혁신계획을 토대로 각 대학은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평가 시 추진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환류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각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결과와 인센티브를 연계하여 혁신 성과 환류

Ⅲ. 2026년 추진 내용

1

중점 추진 방향

□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사립대학 혁신

- (지방대학 특성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지방대학이 고유의 강점분야에 자원을 집중하여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특정 지역·분야를 벗어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학과구조 개편 등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선 추진
- (적정규모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에 맞춰 선제적으로 정원 감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

□ 미래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혁신 지속 추진

- (교육혁신 지속) 다전공, 소단위전공 등 유연한 학사 운영 , AI·디지털 기반 교육과정 혁신, 학생 주도적 학습 지원 강화 등 선도적으로 혁신하는 대학에는 재정지원 강화
 - 학과 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을 통해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

□ 성과 기반 차등 지원체계 확립 및 자율성·책임성의 조화

- (성과관리 강화) 혁신 성과가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재정지원체계 확립
- (자율성 확대) 대학의 자율 혁신 지원을 위해 사업비 총액 배분 및 규제 최소화를 통한 재정집행 자율성 지속 확대
 - (책임성 강화) 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 등 부정·비리 발견 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책임성 강화

2

세부 지원계획

□ 지원 기간 및 대상

- (지원기간) '26. 3. 1. ~ '27. 2. 28.
- (지원대상) 141교(사립 138교, 국립대법인 2교, 공립 1교)
 - ※ 사업기간 중 기관평가인증 미통과 시 지원금은 일할 계산하되 당해연도까지 사업기간 유지
 - ※ 사업기간 중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연도 기 지원금 환수(전액 미지원)
- (지원규모) '26년 8,191억원 ※ 사업관리비 27억원 포함

< '26년 지원대상 및 사업비 현황 >

구분	'25년	'26년	비고
지원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 138교	일반재정지원대학 141교	
총 사업비	7,955억원	8,191억원 (특성화 제외 시 7,341억원)	특성화 인센티브 850억원 포함
교당 평균 지원단가	57.6억원	58.1억원 (특성화 제외 시 52.1억원)	사업관리비 포함

□ 사업비 배분

- (사업비 구분) 사업비 총액(특성화 인센티브 제외)을 정량성과 사업비(50%)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정성성과 사업비(50%)로 구분
- (권역별 배분) 정량 및 정성성과(적정규모화 지원금 제외) 사업비를 권역별로 '학부 재학생수(50%)'와 '학교수(50%)' 기준으로 배분
 - * 수도권 / 대구·경북·강원권 / 충청권 / 호남권 / 부산·울산·경남권
 - ※ 정량 및 정성성과(적정규모화 지원금 제외) 사업비는 권역별 배분 후, 권역별 배분 금액 내에서 각각 기준·기회균형 포물러 배분 기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별 배분

< '26년도 사업비 배분(안) >

정량성과(50%)		정성성과(50%)			+	특성화 인센티브 (비수도권)	=	대학별 지원액
기준 포물러	기회균형 포물러	+	교육 혁신 (80%)	자체 성과관리 (20%)	+	적정 규모화 지원금		

▶ 재학생 수·학교 수에 따라 권역별 배분

1 정량성과

- (지원대상) 141교(사립 138교, 국립대법인 2교, 공립 1교)
 - ※ 국립대법인, 공립대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지원
 - ※ '26년 신규 진입대학은 기회균형 포물러 사업비만 지원('26년 재정진단 통과 시 '27년 정량성과 사업비 전체 지원)
- (사업비) 3,657억원 ※ 사업관리비 제외
- (사업비 구분) 기준 포물러 + 기회균형 포물러*로 구분
 - * 기회균형 포물러(700억원) = 규모지수(500억원)+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지수(200억원)

< 정량성과 사업비 구분 >

기준 포물러			+	기회균형 포물러		= 대학별 정량성과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		규모지수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지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재학생수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재학생수	가중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학생 수	

- (기준 포물러) 권역별 기준 포물러 사업비 총액 규모 내에서 대학별 기준경비, 규모(재학생 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배분
- (기회균형 포물러) 권역별 기회균형 포물러 사업비 총액 규모 내에서 규모(재학생 수),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지수를 고려하여 배분

< 정량성과 사업비 구성요소 세부 내용 >

구 분		내 용
기본 배분 지표	기준경비	■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규모지수	■ (기준 포물러) 학부 재학생 수의 제공근 ■ (기회균형 포물러) 학부 재학생 수
	교육여건	■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을 표준화(평균1, 표준편차0.4)한 각 변환점수 합으로 교육여건 점수* 산출 * 교육여건 점수 = (재학생충원율 변환점수×1.5) + 교육비 환원율 변환점수 $\text{지표별 변환점수} = 1 + \left(\frac{\text{지표별 점수값} - \text{지표별 평균값}}{\text{지표별 표준편차}} \times 0.4 \right)$ ※ 지표별 변환 점수의 최저점 0.2점, 최고점 1.8점으로 설정(±2표준편차)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지수	■ 가중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학생 수 = 기초·차상위 학생수×1.0 + 1구간 학생 수×0.9 + 2구간 학생 수×0.8 + ... + 8구간 학생 수×0.2 + 9구간 학생 수×0.1

- ※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은 '25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
- ※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지수는 '25년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

② 정성성과 (교육혁신+자체 성과관리)

- (지원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 141교(사립 138교, 국립대법인 2교, 공립 1교)
- (사업비) 3,357억원 ※ 사업관리비, 적정규모화 지원금 제외
- (사업비 구분) 교육혁신(80%) + 자체 성과관리(20%)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지표별 절대평가를 통해 지원
- (성과평가) 교육혁신 성과 및 자율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운영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 실시
- (결과활용) 권역별 정성성과 사업비 총액(적정규모화 300억원 제외) 내에서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로 지급

③ 정성성과 (적정규모화)

- (지원대상) 전체 일반재정지원 대학 중 '25년 미충원(정원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27~'28)을 수립한 대학
※ 글로벌대학의 정원 감축 계획과 중복 불가
- (사업비) 300억원
※ 대학별 지원금 상한액, 적정규모화 계획 총량 등을 감안하여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지원 규모 감액 시 성과평가에 따른 정성성과 사업비 배분(전체 대학)에 활용)
※ '25년 적정규모화 지원금 수혜대학의 경우 감축 실적을 선제적/미충원분에 각각 포함하여 3주기 내 계속 지원(이행여부 점검 예정)
 - 선제적 감축 지원금(210억원) : '25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적정 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금 지급(1교당 최대 10억원)
 -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90억원) : '25년 미충원 규모 내의 적정 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각 지원금 규모(210억/90억원) 내, 대학별 적정규모화 계획('26~'27년 및 '27~'28년)에 따라 권역 구분 없이 배분
 - 입학정원 감축 실적에 따라 지원하며, 정원 감축 완료 시 3주기('25~'27) 내 지속 지원
 - ※ '26년 대비 실질적인 정원조정 효과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예정이며, 적정규모화 지원 대학은 수혜기간 동안 교육부 승인 첨단학과를 제외한 정원 증원 불가

< 적정규모화 정도에 따른 지원금 배분기준 >

적정규모화 계획('27~'28) 상 총 감축 규모
(=선제적 감축+미충원분 감축)

선제적 감축 지원금(210억원)

선제적 감축(미충원분 대비 초과 감축) 환산정원(명)	
'25년 신입생충원율 98% 이상	초과 정원감축 인정분(명) ×3
'25년 신입생충원율 95% 이상 98% 미만	초과 정원감축 인정분(명) ×2
'25년 신입생충원율 95% 미만	초과 정원감축 인정분(명) ×1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90억원)

미충원분 감축 환산정원(명)
미충원 규모 내의 정원감축 인정분(명) ×1

※ 신입생 충원율(%) = {정원 내 입학자(명) / 정원 내 모집인원(명)} × 100

※ 환산정원 = 정원감축 인정분 × 신입생 충원율에 따른 가중치

※ '25년 적정규모화 지원금 수혜대학의 경우 감축 실적을 선제적/미충원분에 각각 포함하여 3주기 내 계속 지원(이행여부 점검 예정)

- (이행점검) 매년 성과평가 시 자율혁신계획 상의 기존 적정규모화 계획 이행 여부 점검 → 미이행 시 지원금 환수 또는 사업비 조정

※ '25년 지원금 수혜대학은 증빙자료(대입전형시행계획, 학칙 등) 첨부하여 제출

▶ '26년 적정규모화 계획('27~'28) 인정 기준

인정 (부분인정)	1. '27~'28년 입학정원 감축 2. 대학원 정원 증원을 위해 학부 정원 감축 시 감축인원의 50% 인정 3. 입학정원 모집유보 인원의 50% 인정 4. 정원을 성인학습자 등 학령인구 외 정원 전담과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인원의 50% 인정 ※ 2~4번 항목은 최소 3년 이상 유지한 후 대학별로 복구 여부를 자율 결정 가능하나, 복구 시에는 법령이 정하는 정원조정 요건 충족 필요(기준 별도 안내) ※ 3번 모집유보 해제 시 연도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리
	불인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정원 배정 등을 위한 정원감축 미인정 2. 행정처분 및 법정 의무에 따른 정원감축 미인정 3. 전문대학이 학제개편(2년제↔3·4년제) 후 편제정원을 유지하면서 입학정원은 줄어드는 경우 감축 실적으로 미인정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증원으로 미인정

※ 대학원·모집유보·성인학습자 정원 부분 인정범위는 변동 가능

※ 2주기 및 3주기('26-'27) 적정규모화 계획 이행과 관련된 유지 의무는 지속 필요

4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인센티브)

※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계획은 별도로 수립 예정이며,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비수도권 사립대학 15개교 내외 ※ 글로벌대학 제외
- (지원규모/지원기간) 850억원 / 5년
- (지원내용) 강점 분야 중심의 학과구조 개편 등을 통한 특성화 지원

3 사업비 집행기준

□ 사업비 편성 방향

- 대학에서 수립한 자율혁신계획에 따라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연구 분야 등 학생 지원 영역을 우선 편성
 - 기회균형 포괄러 사업비(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지수 산출액)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 지원 영역에 우선 편성 권고
 - 의과대학 '24-'25학번 맞춤형 교육 지원 등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가능
- 우선 편성 이후 대학이 필요로 하는 혁신지원사업 이외 인건비 및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를 총액 한도 내 편성 가능

※ 향후 대학 재정 여건 및 사업비 편성·집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준 보완 검토

□ 세부 집행기준

- (원칙) 상위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에 별도 사업비 지침을 통한 규제(집행불가 항목)는 최소화하여 대학의 자율성 제고
- (인건비)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에 집행 가능(총액 한도 25%)하나, 국고 사업비를 통한 기존 교직원 임금 인상은 불가
 - '26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사업비 총액의 최대 30%까지 상향 조정

※ 기존 교직원의 일괄 임금 인상 및 명예퇴직금 등 목적으로는 활용 불가

-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공과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상비성 경비를 10% 한도 내 편성 가능

<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 및 한도 >

비 목	집행불가 항목	총액 한도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
장학금	-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 건물의 신축 투자 및 토지 매입 제한	-
인건비	- 급여, 수당 등 통상 임금이 아닌 명예퇴직금 - 기존 교직원의 임금 인상 목적 ※ 기존 교직원 인센티브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25%*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10%

* 2026년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대해서는 최대 30% 집행 가능

4 정성성과 평가 계획

□ 지원 기간 및 대상

- (방향) 대학이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각 대학의 성과를 평가하고,
 - 과감히 혁신하는 대학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체 대학에 확산
- (대상/시기) 일반재정지원대학 141교 전체 / '26. 6~7월 중(예정)

□ 평가 지표 및 내용

- 혁신 성과, 자체 성과관리 2개 영역에 대하여 평가

<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내용(안) >

영역	지표별 평가내용(배점)	비고
혁신 성과	1. 교육혁신 성과(80)	정성지표 절대평가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혁신 추진 성과 및 계획	
자체 성과관리	2. 자율 성과지표 관리 및 환류 실적(20)	정성지표 절대평가
	• 자율 성과지표 관리 및 학내 성과관리 계획(실적)	

1 교육혁신 성과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별·지역별 여건에 맞게 인재 양성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의 혁신 의지 평가
-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혁신,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등의 추진 성과 및 전략 평가
- ※ (기존 대학) '25년 혁신 성과 및 '26~'27년 추진계획에 대해 평가
- ※ ('26년 신규 진입대학) 그동안 대학이 추진한 모든 혁신성과 및 '26-'27년 추진 계획에 대해 평가

< 교육혁신 성과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예시)	평가 주안점
교육 혁신	• 교육체제 개편 및 학사구조 유연화 등 성과 ※ 기성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이 아닌, 지적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개편 - 전공의 벽을 넘는 융합교육 운영 - 실질적 전공 선택권 보장(전과, 복수전공 등) - 전공자유선택을 위한 모집단위 운영·개편 ※ 입학 이후 전공탐색을 거쳐 전공선택권 부여 • 기초학문 및 교양교육 활성화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 등 • 학과 개편 등 구조개선 계획 및 실적	• 일회성 지원이 아닌 학내 체계 구축 중점 평가 • 양적 요소(수혜학생 규모, 운영 규모 및 비율 등) 고려
제도 기반	•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 (예) 전공 선택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교원·재정·공간 등 주기적 재조정, 학과와 상관없이 교수 선발·배치*, 교육과정 개편에 참여한 교원에 포인트 제공 및 연봉으로 연계 등 * (예) 단과대학 소속, Joint Appointment 등 • 학생 맞춤형 지도를 위한 기반 구축 ※ (예) Academic Advisor의 맞춤형 교육 지원 전담 지도교수 배정 등 - 기타 성공적 운영을 위한 대학 내 자율 교육혁신 • 학생 전공·진로 탐색 및 선택을 위한 학생지원체계	• 혁신과제의 적극성·도전성 등 난이도, 학내 구성원 간 협의 등 평가

※ 지역 및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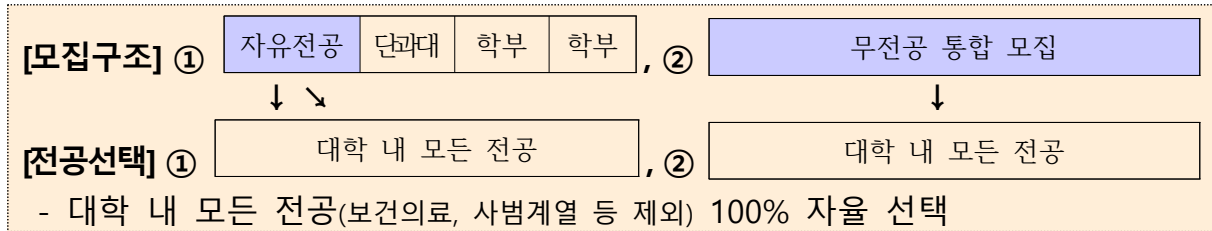
② 교육혁신 성과(가산점)

○ 수도권대(64교)는 '27학년도 모집단계 혁신성과에 대해 가점 부여

※ ('25) 정성평가 100점 + 가점(최대 15점) → ('26) 정성평가 100점 + 가점(최대 7점)

① 모집단계 혁신 성과 인정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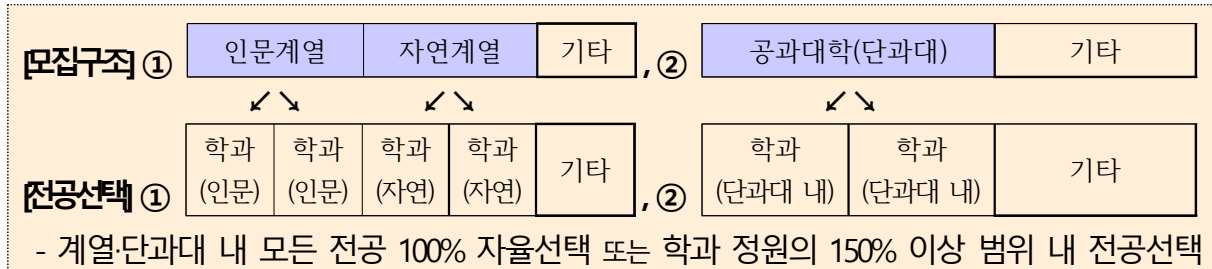
(유형1)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예: 자유전공학부 등) 후,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 자율 선택



(유형2)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 모집* 후, 계열 또는 단과대 내 모든 전공 자율선택 또는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전공 선택

* 계열·단과대 내 전공·학과를 일부 분리모집하는 경우도 인정

- 다만, 혁신성·적절성 등에 대해 정성평가에서 반영 가능



② 모집단계 혁신 성과에 대한 가점표

		유형 1 + 유형 2 (단위: %, 이상~미만)					
		0~5	5~10	10~15	15~20	20~25	25~
유형 1	0~5	0	1	2	3	4	5
	5~10	-	2	3	4	5	6
	10~	-	-	4	5	6	7

※ 유형별 모집단계 혁신 비율 = $\frac{\text{해당 유형 입학정원}}{\text{전체 입학정원*}}$

* 입학정원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내 모집인원' 기준도 인정

③ 모집단계 혁신 성과 인정 관련 모수 산정 범위

전공 유형	모수 포함 여부
정부 정원관리 전공 (보건의료계열, 사범계열)	모수 제외
각 부처 인재양성사업에 따른 전공, 희소·특수학과, 계약학과, 재직자·성인학습자·특수교육대상자 모집인원 등	대학별 자율적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수 제외
예체능계열, 종교계열, 첨단학과(교육부 승인)	대학별 자율적 모수 제외 ※ 모수 제외 학과에 대한 전공선택권 부여는 대학 자율적 결정(정성평가 반영) ※ 10% 범위에 미포함

* 입학정원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내 모집인원' 기준도 인정

3 자체 성과관리

- 대학의 자율 성과지표 관리 계획 및 환류 체계의 적절성 평가
 - 자율 성과지표 적절성·달성도(지표 변경 시 변경사유의 타당성 등 포함)
 - 학내 성과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자체평가 등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의 논리적 정합성 등 평가
- ※ '26년 신규 진입대학은 자율성과지표 구성의 타당성, 목표값 설정의 도전성 등을 중점 평가

□ 평가방법 및 결과 활용

- (평가 방법) 정성지표(교육혁신 성과, 자체 성과관리)는 패널별 평가로 점수 산출하고, 서면검토 및 질의응답을 통한 지표별 절대평가 실시
- (결과 산출) 평가영역별로 패널 내 순위 및 평점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최종 영역별 합산 점수(등급)는 미도출
 - 수도권외의 경우 교육혁신 성과 가산점을 합산하여 등급 도출
- ※ S(95점 이상), A(90점 이상 95점 미만), B(80점 이상 90점 미만), C(80점 미만)

- (사업비 배분) 사업비를 ①권역별 배분 후, ②지표별 배점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③대학별 전체 포물러 및 ④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배분

① 권역별로 '학부 재학생 수(50%)'와 '학교 수(50%)'를 기준으로 배분

② 교육혁신 성과(2,685.6억원), 자체 성과관리(671.4억원)

③ '26년 신규 진입대학은 기존 대학과 동일하게 정량성과(기준+기회균형) 사업비 전체를 기준으로 정성성과 사업비 산출

④ 성과평가 등급별 인센티브 가중치 : A(1.5), B(1.0), C(0.5)

- '교육혁신 성과' 영역은 S등급(2.0)까지 부여

※ 비수도권 4개 권역별 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대학은 '지역 강소대학'으로 보아 A등급 가중치는 1.7, S등급 가중치는 2.2로 상향 적용

- (성과관리 강화) 혁신 성과 및 계획 이행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성과가 미흡한 대학에는 사업비 감액 등 성과관리 철저

- 대학이 '25년 성과평가보고서에서 수립한 핵심 교육혁신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달성도, 우수성 등) 평가

- (2년 연속 S등급) 정성성과 사업비 30% 추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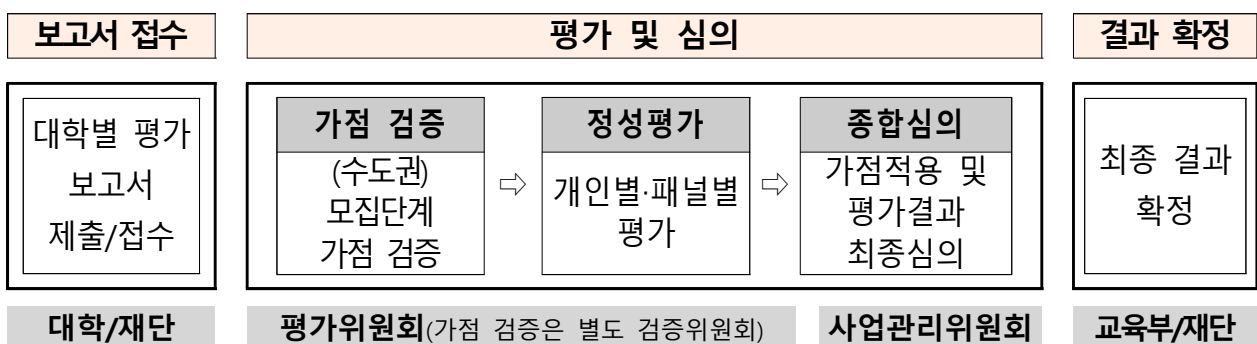
(2년 연속 C등급) 정성성과 사업비 미지원 + 정량성과 사업비 30% 감액

※ 교육혁신 성과가 '25년-26년 연속 S등급 또는 C등급일 경우 해당되며, 정성성과 사업비에는 적정규모화 지원금 제외

- 예고(D등급 신설) '27년 기존 평가등급(S~C)에 D등급 신설, 혁신 성과가 미흡한 대학에는 당해연도('27) 정성 미지원 + 정량 50% 감액, 2년 연속('27-'28) D등급 대학은 정성 미지원 + 정량 70% 감액하고 향후 5년간('29-'33) 정량·정성 전액 미지원

※ 평가방법 등 구체적 기준은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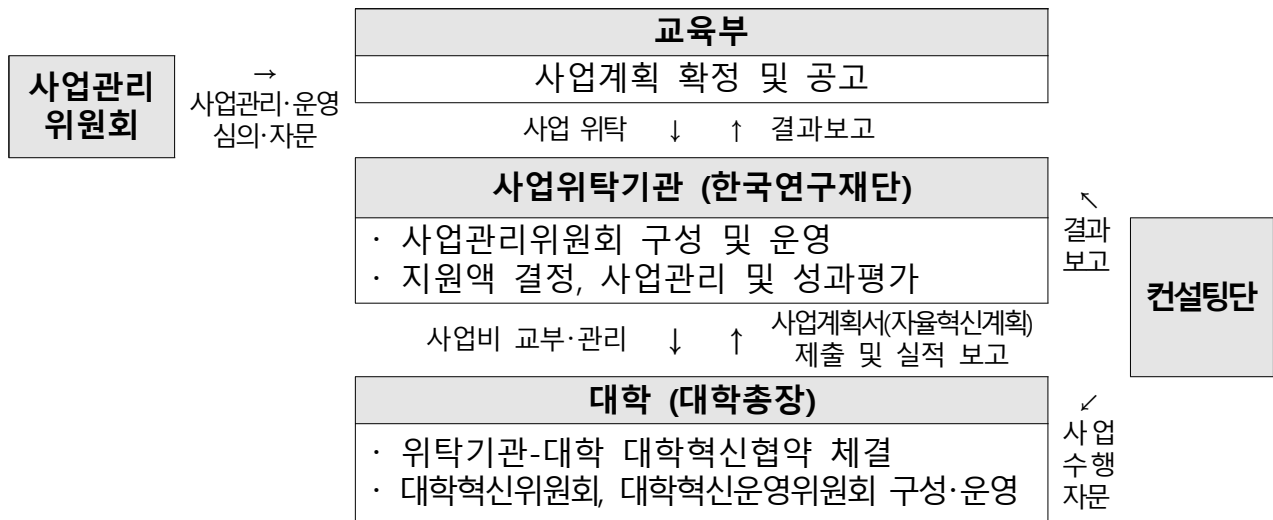
< 평가 주요 절차 >



※ 절차 및 방식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평가 세부계획 안내 시 확정·안내 예정

사업 추진체계

□ 추진 체계 및 역할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 등 사업 총괄
- (사업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 관리·운영 수행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분석,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및 컨설팅단 구성·운영 등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 자문, 지원대학별 지원금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심의
- (컨설팅단) 대학별 교육혁신 성과 및 전략, 자율혁신계획, 재정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자문 지원
 - ※ 대학관계자, 연구원 등 고등교육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대학별 성과 및 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한 대학 자문·권고 및 컨설팅 지원
- (대학) 지원대학의 장은 위탁기관과 '대학혁신협약' 체결
 - 협약 기간 및 당사자, 의무이행사항 및 불이행시 조치사항, 사업비 관리·사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 대학별 총괄 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 환류

- (관리체계 구축) 대학 내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자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 평가·환류 강화
 - ※ 자율혁신계획 수립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학생회장, 단과대학 대표, 학과 대표, 학생위원(공개모집) 등 대표성 있는 학생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사업에 충분히 반영
- (대학혁신위원회) 자율혁신계획상의 혁신전략에 근거한 투자계획 수립 및 자체 성과관리 등 재정지원사업 운영 총괄 관리
 - ※ 총장 포함한 교무위원 중심 구성, 주요 사업 책임자 및 재학생(대표성 있는 학생 포함) 필수
-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사업 시행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관리 등 대학 전반적인 사업 관리
 - ※ 혁신지원사업 총괄 책임자 중심 구성, 외부전문가 및 재학생(대표성 있는 학생 포함) 필수
 - ※ 각 기능은 대학 내 구축하되, 대학 규모,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혜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혁신위원회로 통합 운영 가능

사업 관리

□ 협약 체결

-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총장은 사업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의 책무성 확보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교부) 지원예산은 기관(대학총장)에 총액(Block Grant)으로 교부하며 교비회계(대학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 (집행) 대학에 배분된 사업비는 '자율혁신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
 - 사업개시일('26.3.1.) 이후부터 사업비 교부 전 대학 자체 재원으로 선(先)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
- (점검) 집행 실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당집행 의심사례 발생 시 재정집행 적절성 판단을 위한 심의기구 운영(사업위탁기관)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정산) 국고 지원금은 '27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되,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사업위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
 - ※ 단 사업비 지급사가규모 대학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 범위 조정 가능
 - ※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는 사업 종료 시 반납
- (결과보고) 대학은 연차별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 포함)를 제출하며, **성과평가 보고서**(성과목표 달성여부 포함) **첨부** 제출

□ 성과 관리 및 확산

- (자체 성과관리) 자율혁신계획의 효과적인 이행 및 성과 창출을 위해 **학내 성과관리 전담기구***를 구축하여 자체 성과관리 추진
 - * 예시: 성과지표 설정,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등을 위해 성과관리본부(IR) 구축
- (우수사례 확산) 대학의 교육혁신 성과 등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성과공유회**, **성과포럼** 등 개최, **백서 발간**
- (컨설팅) 교육혁신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개선을 위해 컨설팅 지원

□ 국고지원금 책무성 확보

-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횡령,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대학의 부정·비리 등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가 판단하여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 사업비 집행 점검 실시
 - 특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
- **사업비 삭감, 환수 등에 따른 잔여 사업비는 사업관리위원회가 판단하여 다른 지원대학에 배분 가능**
 - ※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삭감·환수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사업비 재지급 가능

- 사업 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학 자체 부담

IV. 기타 행정사항

□ '26년 사업비 확정 및 지급 일정

- 대학별 교육혁신전략 추진 및 성과평가 준비 등 일정을 고려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사업비를 최종 확정·지급

1차 사업비 지급 및 대학별 집행	'26.3.~
↓	
성과평가 실시	'26.6~7월
↓	
사업비 확정 및 2차 사업비 지급	'26.8~9월
↓	
집행완료 및 정산	~'27.2월

V. 향후 일정

- 대학별 '26년 사업 협약 체결 및 1차 사업비 지급: ~'26. 4월
- 실적 보고서 제출 및 성과평가 실시 : ~'26. 7월
- 사업비 확정 및 2차 사업비 지급: ~'26. 9월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 **참여 대학**

권역	대학명
수도권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서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기독교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용인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평택대학교, 칼빈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홍익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경동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김천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동국대학교(WISE), 동양대학교, 상지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위덕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충청권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벌), 건양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극동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전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세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우송대학교, 유원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호남권	광신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초당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원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가야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신대학교

※ 재정진단 및 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참여 대학은 변경될 수 있음

□ 지표 총괄표

영역	지표별 평가내용			배점
	비수도권		수도권	
교육혁신 성과	1. 교육혁신 성과의 우수성			
	• 유연한 학사 운영	• 유연한 학사 운영(10)		20
		• 모집단계의 혁신성(10)		
	• 학생 지원 및 관리 체계			30
	•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25
	• 교육과정 및 수업혁신(20)	• 교육과정 및 수업혁신(18)		
	• 기초학문 및 교양교육 활성화(5)	• 기초학문 및 교양교육 활성화(7)		
	2. 교육혁신 제도·기반 구축			
	• 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학내 논의체계 및 행·재정적 지원체계			15
	3. 교육혁신 전략 이행 점검			
• 교육혁신 전략 이행 점검 ※ '25년 성과평가보고서상의 핵심과제 이행 여부 평가 ※ '26년 신규 진입대학은 미평가 : 1번(교육혁신 성과의 우수성)과 2번(교육혁신 제도·기반 구축)을 평가(90점 만점) 후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			10	
소 계			100	
자체 성과관리	1. 자율성과지표의 적절성			
	• 자율성과지표의 적절성			20
	• 자율성과지표의 달성도 ※ '26년 신규 진입대학은 목표값 설정의 도전성 합리성 및 타당성 등 평가			25
	2.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 구성·운영의 적절성			
	• 대학 성과관리 조직 구성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30
	• 자체평가 및 성과분석 결과 환류			25
소 계			100	

※ 지표별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교육여건 지표별 상세 기준

용어의 정의, 인정 기준 등은 2025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를 준용하되, 일부 상이한 부분은 아래 각 지표별 내용에 기재되어 있음

지표	세부 내용
재학생 충원율	$\frac{\text{정원 내 재학생 수(명)}}{\text{학생 정원(명) - 학생 모집정지 인원(명)}} \times 100$ ※ 대학원 재학생 수 제외 ※ 학생정원 : 모집단위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대학정보공시 지침서 4-라-1 학생정원 작성지침 준용) ※ 학생모집정지인원 : 학생정원이 산출되는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에서 행정처분으로 학생 모집이 정지된 인원 ※ 재학생 충원율이 100% 초과 시에는 100%로 환산 ▶ 기준 :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자료 ▶ 공시항목 : 4-라-1.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frac{\text{총 교육비(원)}}{\text{등록금 수입총액(원)}} \times 100$ ※ 국립대 법인, 공립대는 141교 기준 표준화 ※ 사립대는 138교 기준 표준화 1) 총 교육비 - 국립대법인·공립대 : 대학회계(일반·법인회계 포함) + 발전기금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입비(최근 3년 평균) - 사립대 : 교비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입비(최근 3년 평균) 2) 등록금 수입총액 : '학부+대학원 등록금 수입 총액' 항목을 활용함 ▶ 기준 : 각 회계연도 결산 ▶ 공시항목 - 교육비 : 국립대법인·공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나-1. 학생 1인당 교육비, 사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나-2. 학생 1인당 교육비 - 등록금 수입액 : 12-다-1. 장학금 수혜현황의 학비감면 준수 여부 항목의 등록금 수입 총액